

법정교육

「공연장 실종아동 예방 교육」

□ 교육 목적

공연장 서비스 인력 및 관리, 운영에 있어 실종아동 예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‘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’을 정확히 이해하고 공연장 내에서 발생하는 실종아동의 조기 발견과 그에 따른 적절한 대응조치를 통해 실종 기간의 장기화를 미연에 방지하고 유괴 등 각종 범죄를 예방하기 위함, 또한 공연장내 실종아동 발생 시 빠른 대처와 관련 준비시설을 갖추고자 함

□ 교육 근거

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, 제9조의3(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 등)

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실종아동등을 빨리 발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종아동등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지침(이하 "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"이라 한다)을 마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.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·장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·장소의 소유자·점유자 또는 관리자(이하 이 조에서 "관리주체"라 한다)는 실종아동등이 신고되는 경우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에 따라 즉시 경보발령, 수색, 출입구 감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9. 「공연법」에 따른 공연이 행하여지는 공연장 등 시설 또는 장소

③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른 시설·장소의 종사자에게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에 관한 교육·훈련을 연 1회 실시하고, 그 결과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④ 관할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이 준수되도록 제2항에 따른 조치와 제3항에 따른 교육·훈련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지도·감독하여야 한다.

[시행일 : 2018.4.25.] 제9조의3

교육 내용

○ 교육내용

-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종아동의 범위와 실종아동 예방 수칙 및 실종아동 발생 시 행동요령(코드 아담)을 학습하고, 과거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례를 통하여 대처요령을 습득한다.
- 공연장 부서 또는 근무자별 배치장소, 역할을 고려하여 실종아동예방 지침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자체 지침 수립방법을 학습한다.
- 공연장내 실종아동 발생 시 빠른 대처를 위해 갖추어야할 필수 시설에 대한 지식을 학습한다.
- 유관기관 협력 시스템 구축 및 유관기관 합동 훈련 실시를 통한 아동실종 시 대응요령 학습

○ 강사초빙 및 교육일정

- 요청시 배정

○ 강사료 및 교재비 등

- 별도 협의